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(8공구)]

- 점검일시 : 2018.10.19 (금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한종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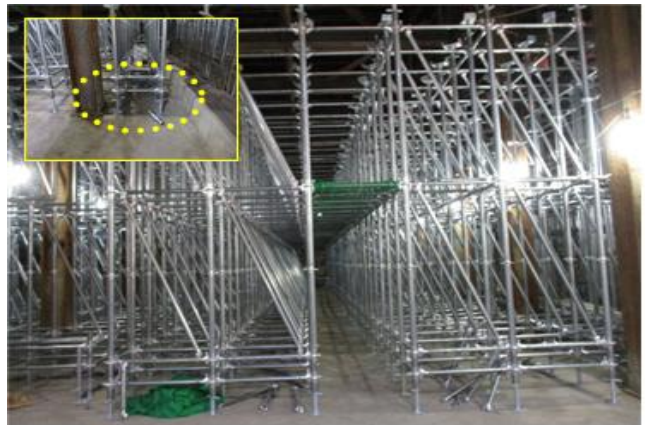
○ 가설통로 안전(토목부)

- 염곡지하차도 상부 철근조립 준비중으로 생명줄이 쳐져있으니 처짐을 보완하고, 통로로 설치된 각파이프는 작업발판으로 교체하여 2점이상 고정하고 난간을 설치하기 바람.
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(작업발판의 구조)
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1(안전난간)



○ 가설통로 안전(토목부)

- 매현지하차도 시스템 동바리 설치중으로 동바리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계단이 미설치되어 있으니 상부 작업(멍에 및 장선 등 설치)전에 계단을 설치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바람.
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



○ 감전재해 예방(토목부)

- 작업용 전선이 바닥에 설치되어 차량이나 그 밖의 물체의 통과 등으로 절연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니 가공 등 조치하기 바람.
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15조(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토목부)

- 사용이 완료된 목재 및 가연성 쓰레기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즉시 반출하기 바라며, 부득이하게 현장에서 보관 시는 방화포를 덮어 관리하기 바람.



○ 기타 안전관리(토목부)

- 작업장 경계에 설치된 PE방호벽은 쾌적한 운전을 위하여 차선에서 일정거리를 떨어져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,
- PE방호벽에 물 등을 채워 차량 충격에 밀리지 않도록 조치하고, 세척을 실시하여 교통시설물(델리게이트 등)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조치하기 바람.



○ 기타 안전관리(토목부)

- 차량 세륜 시 발생된 처리수가 도로에 체수되어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니 처리수가 고이지 않도록 조치하고,
- 지속적으로 작업장 바닥을 청소(세척)하여 현장 밖으로 토사혼합물이 반출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.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(작업



장의 청결)

